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1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 : 김 윤 · 전진숙 · 강득구

권칠승 · 서미화 · 이재강

한병도 · 모경종 · 김남희
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.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.

반면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3조

제1항제1호바목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"용구"를 "보조기기(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	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		
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			
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재가급여	1		
가. ~ 마. (생 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	
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	바		
일상생활 • 신체활동 지원			
및 인지기능의 유지・향상			
에 필요한 <u>용구</u> 를 제공하	<u>보조기기(「장애</u>		
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	인・노인 등을 위한 보조		
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	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		
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	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	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<u>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)</u> -	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		